



##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 Check point!

- Check 1 이천시 및 수도권(경기·서울·인천)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
- Check 2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 (태아, 입양자녀 포함)
- Check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(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충족)

### 특별공급 청약 일정

구분	신청 일시	신청 방법	신청 장소
특별공급 청약	2024. 11. 11. (월) 09:00 ~ 17:30	인터넷 청약 (PC 또는 스마트폰)	한국부동산원 '청약Home' 홈페이지 - PC : www.applyhome.co.kr - 스마트폰 : '청약Home'
당첨자 발표일	2024. 11. 20. (수)	한국부동산원 '청약Home' 홈페이지(www.applyhome.co.kr) 확인 가능	

\* 정보취약계층(고령자, 장애인 등)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 접수 가능함[접수시간 10:00~14:00]  
-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함

### 주택형별 공급세대수

구분	주택형	59A	59B	소계
		다자녀가구	경기도 50%	19
	서울/인천 50%	19	7	26
합계		38	14	52

###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

구분	내용
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(경기도/서울특별시/인천광역시)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-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거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.</li> <li>•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(태아, 입양자녀 포함)이 있는 분('24.03.25시행) -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,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.</li> <li>•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(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한 분</li> </ul>
당첨자 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당첨자 선정 순서: ①지역 → ②배점 → ③미성년 자녀수 → ④청약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분 → ⑤추첨</li> <li>- 지역 : 해당지역 거주자 50%(이천시 및 경기도 거주자) → 기타지역 거주자 50%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 거주자) *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%를 이천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, 나머지 주택(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 포함) 50%는 서울시 및 인천시 거주자(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)에게 공급합니다.</li> <li>* 해당지역 우선공급 50% 물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이천시 거주자가 경기도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.</li> <li>* 이천시 및 경기도 물량의 낙첨자가 발생하여 기타지역(서울시 및 인천시) 물량에서 재 경쟁 시 해당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미적용 됩니다.</li> <li>- 경쟁이 있는 경우 "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"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.</li> <li>-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(1)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(2)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자 순</li> <li>- 공급신청자의 연령도 같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.</li> </ul>
자녀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-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(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·입양한 미성년 자녀)를 포함하되,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</li> <li>-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(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·입양한 미성년 자녀)를 포함하되,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</li> <li>• 임신·입양의 경우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,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,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</li> <li>•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, 유산·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</li> <li>*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</li> <li>*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</li> </ul>



#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안내 ②

##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

배점 항목	총배점 (100)	배점 기준		비고
		기준	점수	
미성년 자녀수 (1)	40	4명 이상	40	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(태아, 입양자녀 포함)
		3명	35	
		2명	25	
영유아 자녀수 (2)	15	3명 이상	15	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(태아, 입양자녀 포함)
		2명	10	
		1명	5	
세대 구성 (3)	5	3세대 이상	5	-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)이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
		한부모 가족	5	- 청약신청자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
무주택 기간 (4)	20	10년 이상	20	- 배우자의 직계존속(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)도 무주택이어야 하며,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- 청약신청자가 성년(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(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)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
		5년 이상 ~ 10년 미만	15	
		~ 5년 미만	10	
해당 시도 거주 기간 (5)	15	10년 이상	15	- 청약신청자가 성년자(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로서 해당시·도(경기도,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)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* 시는 광역시, 특별자치시 기준이고, 도는 도, 특별자치도 기준이며,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·경기·인천 전체를 해당 시·도로 봄
		5년 이상 ~ 10년 미만	10	
		~ 5년 미만	5	
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(6)	5	10년 이상	5	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, 금액,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* 단,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

\* (1), (2) :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(이혼·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)  
(3) :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(3), (4) :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를 적용  
(4), (5) :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(6) :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

## 특별공급 중복청약 관련

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차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, 2024.03.25. 시행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의 2에 따라 세대원 간 특별공급 중복 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.

구분	청약자간 관계	중복청약유형	중복당첨 시 처리방법
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	세대원	특공+특공 [가능]	당첨자발표일이 빠른 건은 유효,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건은 부적격
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	부부	특공+특공 [가능]	접수일시가 빠른 건은 유효, 접수일시가 늦은 건은 무효 *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가 유효
	세대원	특공+특공 [불가]	1건이라도 당첨 시 모두 부적격
		특공+일반 [가능]	모두 유효